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97,696,889	65,930,907
일반회계	1,821,017,049	54,630,511
특별회계	376,679,840	11,300,395
공기업특별회계	264,237,090	7,927,11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9,880,372	3,296,41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091,741	92,7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1,264,977	4,537,949
기타특별회계	112,442,750	3,373,283
주택사업특별회계	105,195	3,156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1,158,224	934,747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14,681	3,440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519,938	225,598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0,670,850	1,520,126
지하수특별회계	3,869,532	116,08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64,789	73,94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59,344	22,780
수질개선특별회계	15,140,454	454,214
기반시설특별회계	303,773	9,113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335,970	10,07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252,46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